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

제정 1997. 6. 13. (규칙 제216호) 변경 2002. 7. 6. (규칙 제386호) 변경 2005. 8. 10. (규칙 제454호) 변경 2006. 7. 11. (규칙 제477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교수의 자격과 추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기간 중 교육상,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며,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본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통산 20년 이상 재직한 자
- 2. 퇴직전 3년간의 전임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
- 3.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비위,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추천할 수 있다.
- 제3조(추천위원회) ① 명예교수를 추대하기 위하여 명예교수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추천위원회는 교무과장, 학생과장, 훈련과장과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이 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된다.
 - ③ 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.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 - ④ 추천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명예교수로 추천된 자의 인격과 덕망, 교육·학술상의 업적
 - 2. 기타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추대절차) ①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부(과)장이 퇴직일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 - 1. 추처서
 - 2.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
 - 3.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
 - 4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 - ② 총장은 추천위원회에서 가결된 자를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.

-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자는 재 추천할 수 없다.
- 제5조(명예교수의 대우)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, 도서관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연구실은 제외한다.
 - ② 명예교수에서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강의는 퇴임직전 3년간 교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강좌(전문실기는 3시간이내)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③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그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자격상실) 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 또는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 7 조(임기) 명예교수의 임기는 임용 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.

부 칙 (1997. 6. 13. 규칙 제21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 9. 1. 규칙 제344호)

이 규정은 2001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 7. 6. 규칙 제386호)

이 규정은 2002. 7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8. 10. 규칙 제454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 7. 11. 규칙 제477호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2007학 년도부터 적용한다.